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감면안

의안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6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평창군 관내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생계를 돕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평창군세를 감면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세 감면

- 피해주민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 면제

나.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감면

-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면제

다. 토지분 재산세 감면

-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된 경우 농지는 200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에서 5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체육용지는 유실.매몰된 면적분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를 경감

라. 자동차세 감면

- 자동차가 멸실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2006년 말까지 폐차한 경우 2006년 하반기 자동차세 면제

마. 사업소세 감면

- 사업소가 유실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6년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

바. 도시계획세 감면

- 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종세인 도시계획세에도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감면안

2006년도 7월 15일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목적)이 감면안은 7.15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세제혜택을 주어 빠른 피해복구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호우피해 확인) 호우피해자 및 피해 주택,건물,토지,사업장이란 읍.면장 또는 평창군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하여 인정한 자와 그 주택,건물, 토지,사업장을 말한다.
3. (주민세 감면)사실상 주택 또는 사업장이 전파,반파,침수된 자 및 사망자. 실종자에 대하여 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한다.
4.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감면)건축물.주택이 멸실(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 전파.반파)된 자의 경우 당해 피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5. (토지분 재산세 감면)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하고 이하 농지라 한다)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유실.매몰을 말한다.)된 피해자의 경우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농지는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에서 5만원까지 경감하고 체육용지는 유실.매몰된 당해 면적분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를 경감한다.
6.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2006.12.31이전 까지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6.7.1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7. (사업소세 감면)사업장이 전파,반파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8. (도시계획세 감면) 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도 준용한다.
9. (평창군세 환급)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평창군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평창군세는 환급한다.
10. (적용시한) 이 감면안은 2006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감면신청)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감면안」에 의하여 평창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평창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별지서식】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한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면내용	세 목	년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합 계		
감면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			
「호우피해자에대한평창군세감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의 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재해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